

제 804 호
1980-10-14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박영수
편집장: 문화공보관 박종우
전화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보

차례

◎ 조 례

- 제 1464 호 : 서울특별시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 관한과태료징수조례 ... 3
- 제 1465 호 :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..... 7
- 제 1466 호 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..... 8

◎ 고 시

- 제 343 호 :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건축계획승인... 9
- 제 344 호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..... 10
- 제 345 호 : 돼지고기연동가죽고시..... 11
- 제 346 호 : 도시계획사업(학교)실시계획인가..... 11
- 제 347 호 : 도시계획시설(학교, 도로, 하수도)지적승인..... 12

<이면 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제 348 호 : 도시계획시설 (미관지구) 지적승인..... 12

◎ 공 고

제 309 호 : 특정역사문화자재시공업지정취소..... 13

제 310 호 : 환지처분공고..... 14

제 58 호 : (준로구공고) 개인공고..... 14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 관한 과태료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

1980년 10월 14일

○ 서울특별시조례 제 1464 호

서울특별시준공미필기존건축물 정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

서울특별시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 관한 과태료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준공미필기존건축물(이하 "건축물"이라 한다)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부과대상자)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대상자로 한다.

제 3 조 (과태료기준) 건축물의 위법사항별 과태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 4 조 (과태료징수) ①서울특별시장은 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정된 통지서와 함께 별지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과태료의 납기는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

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시 경과할 때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준공검사필증 교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제 5 조 (권한위임) 시장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 6 조 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과태료기준

단위 : 천원

위법사항	면적(평방미터) 기준	위법비율		
		10% 미만	10% 이상 - 20% 미만	20% 이상
전폐율위배 (초과전폐율)	150 이상	200	250	300
	115 "	150	200	250
	85 "	100	150	200
용적율위배 (초과용적율)	150 "	200	250	300
	115 "	150	200	250
	85 "	100	150	200
높이제한위배 (초과비율)	150 "	50	150	200
	115 "	40	120	160
	85 "	30	90	120
소정거리위배 (미달비율)	150 "	50	150	200
	115 "	40	120	160
	85 "	30	90	120
기타 건축법 위배	150 "		100	
	115 "		90	
	85 "		80	

(별지)				
납입고지서 (원부)				
년 월 제 호				
회계	특별회계	(주채개발비)	과목	과대표
주소				
성명				
순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과대표				
납부금액	금		원	
납부기한				
납부장소	시 중 은 행			
위와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
198				
구 청 장				인
(은행보관용)				

납입고지서				
년 월 제 호				
회계	특별회계	(주채개발비)	과목	과대표
주소				
성명				
순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과대표				
납부금액	금		원	
납부기한				
납부장소	시 중 은 행			
위와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
198				
구 청 장				인
(세입관서용)				

영수필통지서

년 월 제 호			
회계	특별회계 (주개발비)	과목	과태료
주소			
성명			
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과태료			
납부금액	금	원	
납부기한			
납부장소	시 중 은행		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.			
198			
장 인			
구청장 귀하			

(세입관서용)

영수증

년 월 제 호			
회계	특별회계 (주개발비)	과목	과태료
주소			
성명			
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과태료			
납부금액	금	원	
납부기한			
납부장소			
위 금액을 영수함.			
198			
장 인			

<p>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시장 박영수 1980년 10월 14일</p> <p>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65 호</p> <p>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</p>	<p>서울특별시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교목, 관목의 식재기준을 건축선으로 부터 후퇴거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	
<p>1. 3~5미터 후퇴시 : 관목</p>			
<p>구 분</p>	<p>건물길이 18미터미만</p>	<p>건물길이 18미터이상</p>	<p>식재위치</p>
<p>수 고</p>	<p>0.3내지 0.6미터</p>	<p>0.7내지 1.0미터</p>	<p>건물진면 외벽에</p>
<p>수 관 폭</p>	<p>0.3내지 0.6미터</p>	<p>0.5내지 0.8미터</p>	<p>인접식재하거나</p>
<p>간 격</p>	<p>건물길이 3미터마다</p>	<p>건물길이 3미터마다</p>	<p>보도와 내지경계선 사이에 위치</p>
<p>2. 5미터 이상 후퇴시 : 교목</p>			
<p>구 분</p>	<p>건물길이 18미터미만</p>	<p>건물길이 18미터이상</p>	<p>식재위치</p>
<p>수 고</p>	<p>4미터이하</p>	<p>4미터이하</p>	<p>보도와 내지경계선</p>
<p>홍 고</p>	<p>직경 5센티미터이상</p>	<p>직경 7센티미터이상</p>	<p>사이에 식재시는 도로</p>
<p>간 격</p>	<p>8미터</p>	<p>8미터</p>	<p>로별로 지정된 가로수와 동일수준으로 할것.</p>
<p>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변 표준화분대 설치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 제1항중 제4호를 다음 ①과 같이하고 제14호를 삭제하고</p>	<p>제4항중 제1호를 다음 ②와 같이하고 제3호를 다음 ③과 같이한다.</p> <p>① 4. 자동차 관련시설, 다만, 전용공업지역,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		

②1.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지기하는 건축물
다만, 제4호중 세차장, 영업용
차고, 자동차정류장 및 도심부
직격시설의 외곽이전 계획에
따른 자동차 부속상은 제외
한다.

③3. 관탐집회시설(이 경우 건축
이 제한되는 객석의 바닥면적
기준은 영 별표 2 의 규정
이상으로 한다)

제18조 제3항중 단서를 다음과
같이 한다.

다만, 단 주택, 제22조 제3항및
영제 1.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2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③미관지구내에서 도시계획 결정
또는 변경등으로 인하여 제15조
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
도 기준의 10분의 5 이상인 대
지로서 대지위치 또는 특성으로
보아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
경우에 시장은 위원회의 건축심의
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
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의
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
있다.

제30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③아파트지구 이외에서 공공주택을
건축할때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
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
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
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
있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
시행한다.

·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"서울
특별시 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 개선
조례"등 이에 공포한다.

1980.10.15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
교육감 이 창 갑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466 호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
공인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"제8조"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공인관수자) 공인관수자는
다음 구분에 의한다.

- 1. 교육감 및 부교육감 직인:
서무과서무담당계장

- 2. 민원사무전용 교육감직인 : 민원실 책임자
- 3. 학부국장직인 : 초등교육과사무 담당계장
- 4. 관리국장직인 : 관리과 사무담당 계장
- 5. 각급기관외 회계관계공무원직인 : 회계관계공무원본인
- 6. 교육구청의공인 : 당해 교육구청 관리과 사무담당계장
- 7. 사업소 및 각급학교의공인 : 사무책임자
- 8. 각종위원회외청인 : 당해위원회의 사무책임자

부 칙

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43 호

주택개량을위 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인가및건축계획승인

- 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 처분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제 236 호 (80.7.25)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봉천 4구역 일부에 대하여 관계인의 의견서 심의후
- 2. 도시재개발법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제 7 조와 건축법 제 33 조의 2 및 동법시행령제 5 조에 의거 아래가 같이 농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을 승인함.
- 3. 고시내용
 - 가. 관리처분계획
 -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관계도시는 서울시 재개발 2 과와 관할구청 시민홍 및 주택과에 의뢰하고 인람함.

나. 건축계획

1) 건축물의 규모

구 분	층 수	세대당건축면적	전 체 물	용 적 용	비 고
연립주택	3	50 이 상	35 % 이하	120 % 이하	
단독주택	2	.	50 % 이하	200 % 이하	

- 2) 건축물의 높이
제 1 항의 층수로 하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7 조의 규정을 적용함.
- 3) 건축물의 모양
건축물의 평면은 구역전체 경관조성에 적합한 형으로 하며 지붕은 박공 및 모입 형으로 하여야 함.
- 4) 건축방법
주민자택에 의하여 건설부 지정업체로 하여금 건축함.
- 5) 건축기간: 인가일로 부터 1년간
- 6) 기타사항: 동 구역 건축계획 승인서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함.

1980.10.13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44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77 호 (80.2.28)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 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10.14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 시설(도로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연장	기점	종점	비고
신설	소로	3	144 미터	강동구 풍납동 163 번지	풍납동 166	

*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345 호

폐지고기연동가격고시

농수산부 훈령제 453 호 육류연동가격 시행에 관한규정 제 10 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0.10.14.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
- 1. 폐지고기 (박피) 연동가격 : 600그램당 1,600 원
- 2. 시행일 : 1980.10.15.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346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
실시계획인가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461 호 (79.11.5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실시계획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
국 도시계획 1 과와 시흥군 건설과에서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10.14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지 : 경기도 시흥군 철산리 산 39-1 일대
- 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학교사업 실시계획 인가 광명중·고등학교
- 3. 사업면적 및 규모 : 면적 32,232 ㎡ (9,750 평)
건평 : 1,023 ㎡, 연건평 3,615 ㎡
- 4. 시행자주소, 성명 : 경기도 교육위원회
원희 교육감
- 5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
착 공 일 : 인가일로부터 7 일
이내
준공예정일 : 1981.12.31
- 6. 위치 및 계획 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-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47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, 하수도)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, 하수도)는 다음과 같이 지 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</p>	<p>와 전설부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에 관한 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10.15. 서울특별시 장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가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조서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공업고등학교	마곡동 223-1 외 43필지	27,285㎡ (6,254평)	

나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조서

구 분	등급	류별	번호	폭 원	연 장	기 점	중 점	비 고
신 설	소로	1		10 m	170 m	강서구마곡동 224-1	마곡동 220	진입로

다.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지적승인조서

구 분	시설명	폭 원	연 장	기 점	중 점	비 고
신 설	하수도	2 m	170 m	강서구목동 318-117	목동산 68-33	
신 설	하수도	2 m	88 m	강서구목동산 68-33	목동 324-280	
신 설	하수도	2 m	66 m	강서구방화동 453-10	방화동 448-6	

*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48 호

도시계획시설 (미관지구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381호 (79.8.30)

로 변경 및 결정된 금호대보주변
도시계획시설 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
제13조와 전설부고시제 463호 (79.12.
10)에 의거 다음과같이 고시한다.

가. 도시계획시설(미관지구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종별	연장(m)	면적(㎡)	위치	비고
신설	3	1,030	41,200	장충체육관앞~금호대로터널북쪽	양측 20m
기정	2	1,200	25,800	약수동~장충동~외계로 5가	
변경	2	550	13,200	장충체육관~외계로 5가	공간측소

*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
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10.15

서울특별시 시장

공 고

특정열사용기자재
시공입지성원소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 1 항
규정에 의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
입지성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
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 규정에 의거
여 이를 공고한다.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09 호

라

음

지정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지정품목	위반내용	적용법규	비고
마/24	삼화종합 설비	홍상재	마포구합 정동 414/21	1) 주철계보일러 2) 유문강제 3) 압력용기 4) 온수보일러 1, 2종 5) 구멍탄온수 보일러	무단 제업	에너지이용합 리화법제 22 조 1 항위반 동법제 30 조 1 항 4 호적용	

1980.10.

서울특별시 시장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310 호

환지처분공고

1. 당사가 시행한 시흥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청산금이 결정되어 별첨 도서와 같이 환지처분 하겠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2. 환지확정지정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공람에 공하고 있으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.

1980.10.13.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가. 사업명 :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
 나. 위치 : 영등포구 대림동 일부토지, 구로구 목신동, 구로동, 가리봉동, 시흥동 일부토지, 관악구 신림동 일부토지, 동작구 신대방동 일부토지
 다. 면적 : 1,738,240

○ 종로구 공고제 58 호

개 인 공 고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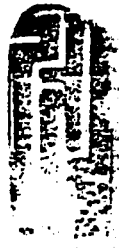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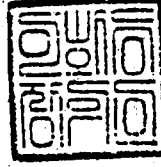

이화동장 및 1, 2가 동장의 직인 및 지인이 장기사용으로 마멸되어 서울특별시 공인 조제 제6조에 의거 개각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함.

1980.10.13

종로구청장

1. 사용일자 80.10.20

2. 직인의 인명

	제 인	개 인
인 명	 	 
공인명	1, 2가동장직인 및 지인	1, 2가동장직인 및 지인
인 명	 	 
공인명	이화동장직인 및 지인	이화동장직인 및 지인